

## 법정통번역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정 철 자 · 유 한 내  
(한국외대·전남대)

### 1. 서론

2019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 명을 넘어섰다(법무부 2019: 14). 이에 따라 범죄사건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 결혼이주민 이혼 증가 등 법률 관련 통번역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통역과 외국인 법률상담 서비스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품질 또한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정철자 외 2019: 1). 최근 수원지법, 법원행정처의 인증시험 실시 후 법정통번역에 인증자를 활용하고 있지만, 그 수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고, 통번역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법정통역의 품질은 여전히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지는 외(2018)의 수원지법 통역인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역 실기시험 통과자는 전체 응시자 중

19.4%에 불과했고, 정철자 외(2019)의 전국 단위 법정통번역인 평가에서도 인증자 비율은 20.1%에 그쳤다.

이는 법정에서 부정확한 통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당수의 법정통역인 등재자들이 정식 통번역 교육 경험이 없으며, 특히 소수 언어 통역인들의 경우에는 통역의 정확성과 배경지식 습득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의사전달 수준에 그치는 통역을 할 가능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소수 언어의 경우 다수 언어에 비해 유능한 통번역인 확보가 어려워 해당 언어로 적절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 이민 사회가 발달하여 이중 언어 구사자가 많아 통역 자원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용이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단일 언어 구성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법통역에 필요한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사법통역의 오류가 심각한 결론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언론 보도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고(국민일보 2018.07.09), 법정에서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정통역의 중요성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표하고 있으나 정작 정확한 통역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여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으로 형사재판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번역인 후보자의 통번역 능력과 수준, 윤리적 인식과 태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선발하여 인증하고, 이러한 인증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수립하여 이러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정통번역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 법정통번역인의 직업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 및 인정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교육과 병행된다면 이 분야의 자원 양성과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자격은 노동시장, 교육훈련과 연계되어 개인의 직업능력에 대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교육 훈련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제까지 국내 법정통번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내 법정통번역 현황 파악(김진아 외 2008; 이유진 2016a; 이지은 2001a; 이지은 2001b), 법정통번역인의 역할(이지은 2012; 이지은 2014; 이유진 2016b; 이지은 2018), 법정통번역 교육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이 연구는 정철자 외 (2019)의 일부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임.

(이지은 2007, 2013; 정혜연 2009; 한원덕 2009; 홍서연 2018), 해외 법정통번역 사례(김윤진 2017; 조희철 2009; 최철 2009)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법정통번역 평가(이지은 외 2019)나 법정통번역 제도 개선(이지은 & 장원경 2016; 이지은 외 2018)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법정통번역 자격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특히 국내 자격 체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정통번역과 관련한 국내외 자격의 유형을 살펴보고, 자격 신설을 위한 편제 적합성을 분석해 법정통번역 자격제도 신설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국내 자격의 유형

본 장에서는 법정통번역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을 제안하기에 앞서, 국내 자격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하고자 한다. 국내 자격의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 자격의 유형별 특징 (권혜자, 이요행 2009: 8-9)

자격 유형		특징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 · 기술인력의 자질 및 사회적 지위의 향상 · 경제발전에서의 기여 촉진
	국가전문자격	· 의료, 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 · 면허적 성격이 강함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 국가 외 법인·단체 또는 개인 운영 · 산업사회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 자격을 국가가 공인 ·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임 ·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인 효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기타 민간자격	· 민간의 학회, 협회 등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격
	사업 내 자격	· 사업주가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 ·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 내용에 맞는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장 직무 내용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여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하는 데 목적이 있음

자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 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으로, 자격은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된다(자격기본법 2017). 국가자격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라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자격기본법 2017). 국가자격은 다시 국가기술자격과 국가전문자격으로 나누어진다. 국가기술자격은 공공성에 바탕을 둔 종목으로, 기술·기능·서비스 분야를 중점으로 하는 데 반해, 국가전문자격은 의료·법률 등 전문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지칭한다. 한편, 민간자격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자격이 필요해지자, 자격의 관리 및 운영의 주체를 다원화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자격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2.1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으로 자격 종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의 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제시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20)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에서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는 자격종목 신설 필요성,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 직무 범위, 직무난이도,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 실태, 그리고 법률에서 제시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와 검정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2020) 제12조(종목 신설 등의 절차)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산업계·학계 등 관련 분야의 단체 또는 주무부처는 주무부장관 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자격 신설 요청(1단계)을 해야 한다.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에 신설 검토의견서를 제출(2단계)한 이후,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하여 신설 자격에 대한 ‘타당성 검토(3단계)’를 시행한다.

국가기술자격 관련 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와 주무부처, 그리고 검정시행기관이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주무부처는 자격종목을 관리하며, 관련 사업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취득자를 활용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정시행기관으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있는데, 검정시행기관들은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집행하고, 시험문제를 출제 및 관리하는 등 실제 검정을 시행한다. 또한 자격취득자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2.2 국가전문자격

자격기본법(2017)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에 따르면 국가자격의 신설은 ① 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② 국방·치안·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③ 그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은 여러 부·처·청·위원회에서 개별 운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신설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신설 기관의 자율성에 근거하고 있다(이동임 외 2012: 183). 국가전문자격 신설 절차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선택적으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국가전문자격 운영 관련 기관으로는 관련 부·처·청·위원회와 검정시행기관, 그리고 자격증 발급 기관이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은 주로 의료·법률 등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개별부처의 필요에 의해 신설되어 관련 부·처·청·위원회에서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데, 특히 소관부처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자격별 시행계획 승인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검정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인 경우 공단본부는 자격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요청, 원서접수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달, 시행결과 취합 및 결과 보고,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기관에 명단 송부, 제도개선 및 지침 제·개정, 시험용품 제작 및 보급을 담당하며, 공단 지부·지사는 원서접수계획 수립, 응시자격 서류 접수 및 심

사, 전산등록, 시험시행 및 결과 보고, 민원 응대를 담당한다. 이외 자격증 발급 기관은 연수 및 신원조회, 자격증발급 및 관리를 담당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 2.3 민간자격

민간자격 신설 분야는 자격기본법(2017)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에 근거하고 있다.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의 해당 분야와는 반대로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아닌 분야, ②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가 아닌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가 아닌 분야, ④ 그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가 아닌 분야에 한정하여 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민간자격은 국가가 주도하여 실시하는 자격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자격 신설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다. 민간자격이 개설된 이후 민간자격의 등록과 국가공인은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자격의 등록 절차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업무위탁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해당 자격관리자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에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는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명칭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회신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등록대장에 기재 및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자격 운영 관련 기관으로는 민간자격관리자와 관련 주무부처, 그리고 민간자격 관리운영센터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있다(민간자격정보서비스).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①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② 자격체계에의 부합, ③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④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⑤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⑥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의 기본방향을 준수하여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간자격 관리운영센터는 ① 민간자격 공인제도 시행, ② 민간자격 등록제도 시행, ③ 민간자격 광고모니터링 조사, ④ 민간자격제도 관련 상담, ⑤ 민간자격정보서비스 관리·운영, ⑥ 자격제도 관련 정책연구 등을 담당한다.

### 3. 국내 통번역 자격의 유형

본 장에서는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국내에는 어떤 자격이 존재하는지 그 유형 및 절차를 알아보려고 한다. 국내외 통번역 관련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 통번역 관련 자격

자격 유형		통번역 관련 자격	관련부처	시행기관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자치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자격	공인민간자격	수화통역사	-	(사)한국농아인협회
	기타 민간자격 <sup>1)</sup>	번역능력인정시험	-	(사)한국번역가협회
		ITT통역번역시험	-	국제통역번역협회
		IP번역사 자격검정 시험	-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사업내 자격	-	-	-	

#### 3.1 외국어번역행정사<sup>2)</sup>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행정사

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없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사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⑦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1차 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의 총 3과목으로, 과목당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으로 실시한다. 총 검정시간은 60분이다. 2차 시험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해당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총 4과목을 1,2교시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시험의 형태는 논술형으로, 각 과목당 4문항(논술 1문항, 약술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교시에는 민법계약과 행정절차론을 100분간 실시하며, 2교시에는 사무관리론과 해당외국어를 100분간 실시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에 따라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한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검정수수료는 1차 시험은 25,000원이며, 2차 시험은 40,000원이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1차 시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으려면 다음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1) 본 연구는 법정통번역 관련 국가자격 신설 제안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인민간자격을 제외한 기타 민간자격의 검정방법은 서술을 생략하였다. ‘번역능력인정시험’, ‘ITT통역번역시험’, ‘IP번역사 자격검정 시험’ 관련 사항은 박지영(2016)을 참조할 것.

2)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발췌.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1>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차 시험도 면제),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1차 시험도 면제)이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합격기준은 1, 2차 시험 모두 매 과목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해당한다.

### 3.2 관광통역안내사<sup>3)</sup>

관광통역안내사는 “관광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통역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으로, 관광통역안내사는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대상물을 설명하거나 여행을 안내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응시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관광진흥법」 제38조제5항(「관광진흥법」 제7조 준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결격사유는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 가능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아랍어 등의 12개 언어이며, 관광통역안내사의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외국어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세 가지 유형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외국어시험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제출로 대체한다.

관광통역안내사의 필기시험은 총4과목으로, 과목당 25문항씩 총 100문항을 2교시로 나누어 실시하며, 문항은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1교시에는 국사와 관광자원해설 과목을 50분간 실시하며, 2교시에는 관광법규(「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와

관광학개론 과목을 50분간 실시한다. 면접시험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의한 평가사항을 해당 외국어 및 한국어를 통해 구술하는 방식으로 1인당 10~15분간 실시한다. 평가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①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④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이다. 관광통역안내사의 검정 수수료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더해 20,000원이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해당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③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필기시험의 전부 혹은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한다.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 전부 면제,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①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② 관광안내실무: 20%, ③ 관광자원안내 실습: 50%)받을 수 있다.

관광통역안내사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배점비율: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로 환산하여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면접시험은 총점의 60점 이상일 때 합격가능하다.

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발체.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L&gId=37>

### 3.3 수화통역사<sup>4)</sup>

수화통역사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에 따라 (사)한국농아인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자격기본법(2017)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 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격기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자격기준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능력을 갖춘 것, ②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③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 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등이다.

수화통역사는 농인과 청인의 의사소통상황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계자의 역할을 담당하며, 의미가 통하는 인습기호, 몸짓, 표지, 수화를 사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는 체계적인 의사소통 촉진자를 말한다.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시험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의 기반을 조성하며 의료, 복지, 법률, 교육,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서 바른 권리를 행사하며 시민으로서의 균등한 기회를 갖게 하는 수화통역의 기본 이념을 바르게 구현하기 위하여 공인평가체제를 통하여 수화통역인에 대한 전문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교육(대학, 대학원, 기타 교육 통역), 의료(병원 통역), 법률(법원, 경찰관련통역), 미디어(뉴스, 예술 등의 방송통역), 직업(취업 알선, 교육, 상담들의 직업을 위한 통역), 의식(종교, 장례식, 결혼식 등 각종행사), 민원(관공서 이용 등), 수화통역 행정(문서작성 및 관리, 전화 및 내방객 면담, 회의 및 세미나)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수화통역사의 검정수수료는 필기시험은 60,000원이며, 실기시험은 60,000원, 자격증 발급비 30,000원이다.

필기시험 응시자격은 만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시험과목은 장애인복

지, 한국어의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이다. 문항 수는 과목당 25문항으로 총 100문항이며, 객관식 4지선다로 이루어져 있다. 합격기준은 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①번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한국어의 이해’와 ‘수화통역의 기초’가 각각 60점 이상인 자이다. 합격자 발표는 수화통역사 시험, 교육 전문 홈페이지(<http://slitt.deafkorea.com>)에서 이루어진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게는 실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과목은 필기통역(녹화된 수화를 보고 문장으로 표현), 수화통역(녹음된 음성을 듣고 수화로 표현), 음성통역(녹화된 수화를 보고 음성으로 표현)이다. 합격기준은 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 ② ①번 조건을 충족시킨 자로서 ‘음성통역’이 60점 이상인 자이다. 합격자 발표는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www.deafkorea.com](http://www.deafkorea.com)) 및 수화통역사 시험, 교육 전문 홈페이지(<http://slitt.deafkorea.com>)에서 이루어진다. 2차 실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연수를 받아야 하며, 2회에 한하여 합격자 연수를 연기할 수 있다. 합격자 연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사유서와 증명서류를 연수일자 7일 이전에 한국농아인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연수 연기가 불가하다.

## 4. 해외 법정통번역 자격

본 장에서는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해외에서는 어떤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할라바크(Hlavac 2013)는 전 세계 21개 국가(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이집트, 독일, 아일랜드,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영국, 미국)의 통번역 자격제도를 개괄하며, 국가별로 자격 요건 및 제도적 특징을 비교한 바 있다. 다음 표와 같이 이들 21개 국가 중 법정통번역 관련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8개이며, 민간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6개, 학위나 교육과정으로 자격을 대체하는 국가는 7개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4)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웹사이트에서 발췌. <http://slitt.deafkorea.com/>

〈표 3〉 국가별 법정통번역 관련 자격 유형

자격 유형	국가명	주관기관
국가 자격	노르웨이	Norwegian Directorate of Integration and Diversity
	미국	번역- American Translators Association 통역-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스웨덴	Swedish Legal,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ervices Agency (Kammarkollegiet)
	영국	Chartered Institute of Linguists
	중국	Ministry of Personnel
	캐나다	Canadian Translators, Terminologists, and Interpreters Council
	핀란드	Translator Examination Board (Ministry of Education에서 임명)
	호주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민간 자격	남아프리카	South African Translators' Institute
	브라질	Brazilian Translators Association
	스페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Cooperation Office of Interpreting of Languages
	오스트리아	Association of Certified Court Interpreters
	아일랜드	Irish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Association
	크로아티아	Croatian Association of Professional Court Interpreters, Association of Permanent Court Interpreters of Croatia 등 5개 기관
학위·교육	네덜란드	시험 없이 Ministry of Justice 교육 수료 후 Dutch Court Interpreters and Legal Translators Association 가입
	독일	자격제한 없음 (다수의 통번역 협회는 존재)
	멕시코	자격제한 없음 (통번역사 대부분 통번역 학위 보유)
	벨기에	법정마다 자격조건이 다름 (대부분 자격시험 부재)
	아르헨티나	자격제한 없음 (통번역 협회는 존재)
	이집트	13개 대학 학부교육
	일본	다양한 민간기관 및 협회에서 교육 및 시험을 담당

#### 4.1 국가자격 부여 국가

할라바크(Hlavac 2013)에 따르면,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실용

적이고 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통번역 서비스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통번역 능력을 한 차례의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시험 결과에 따라 의료 통역사 자격증, 전화통역사 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을 부여한다. 국가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증된 통번역사만이 특정 업무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 4.2 민간자격 부여 국가

일부 국가에서는 전문가 협회 등의 단체가 통번역 자격을 인증한다.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전과여부 등으로 응시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언어 외에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민간자격은 주로 응시자의 언어적 능력만을 검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 4.3 학위 교육 대체 국가

유럽이나 동아시아국가에서는 대학원 과정 등 장기간의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가에서의 ‘자격’이란, 법정통역 등 높은 수준의 정치, 비즈니스, 문학 분야에서 통번역사로 일할 자격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에서 별도의 통번역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주로 역사적인 배경 때문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통번역 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인증을 담당해왔고, 해당 교육기관 졸업생들은 별도의 자격을 획득하지 않아도 통번역 시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었다. 오스트리아, 독일, 벨기에,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유럽 국가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널리 쓰이는 언어인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을 제외하고, 동유럽, 남유럽,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의 언어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 이들 소수언어 통번역은 교육이나 인증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경우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인증되지 않은 인력이 통번역에 동원되어 통번역 품질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반면, 자격 검정 체제를 갖춘 유럽 국가에서는 공식적인 시험으로 통번역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4.4 시사점

조사 결과, 국가자격을 갖춘 국가의 경우 학부나 대학원 수준의 통번역 교육제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존에 학위나 교육으로 자격을 대체했던 국가의 경우 새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의 언어를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언어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Hlavac 2013: 58). 즉,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의해 발달한 각자의 자격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통해 공식적인 자격 검정 체제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법정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격 검정 제도를 통해 통번역 인력을 선발하고, 자격 검정 전·후에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사전교육 및 사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격 검정 체제와 교육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 5. 법정통번역 자격 신설 편제 적합성 분석

본 장에서는 법정통번역 자격과 관련해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민간 자격으로 신설할 경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분석하도록 하겠다.

#### 5.1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 시

국가기술자격의 관할은 각 부처의 소관이 아닌,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도하에 실시된다. 따라서 법정통번역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할 경우 자격 신설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의 이관을 통해 자격의 체계적이고 편리한 신설,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기술자격법에는 기술 기능 산업 및 분야에서의 ‘기술’의 의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해 여전히 ‘단순한 기능’ 위주의 기술자격으로 보고 있다(이동임 2004). 따라서 법정통번역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될 시 법정통번역 분야가 ‘기술 및 기능’ 분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법정통번역의 전문성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또

한 국가기술자격에서 보수교육제도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폐지되었고, 갱신 등록의 의무도 삭제되어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자격취득자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보개선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이동임 2004). 무엇보다 법정통번역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될 시 법정통번역 자격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어 자격의 전문성 및 현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 5.2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 시

국가전문자격은 특수한 직종의 직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자격으로서 법정통번역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가기술자격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문자격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 양성과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법정통번역 자격과 유사한 자격으로서 통번역과 관련된 관광통역 안내사(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외국어번역행정사(안전행정부 산하) 자격 역시 국가전문자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통번역 분야를 특수 전문 분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정통번역이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될 시, 전문분야에 대한 신호가 확실해 지므로 법정통번역의 위상 제고 및 법정통번역의 가치와 의의가 강조될 수 있다. 또한 법정통번역 자격의 신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법원행정처가 독자적으로 역할을 하므로, 자격과 관련하여 법정통번역 관련 인력 진출입, 관련기관 인가 등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법원행정처 주도하에 법정통번역인 고용 여건을 위한 장치로서 자격이 적극적으로 기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통번역 자격이 국가전문자격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에 법정통번역 자격 신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법 재·개정을 필요로 한다. 현재 법무부 관장 국가전문자격에는 변호사가, 법원행정처 관장 국가전문자격에는 법무사가 있다.<sup>5)</sup>

5) 부처별 국가전문자격은 부록을 참조할 것

### 5.3 민간자격으로 신설 시

민간자격으로 신설될 시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자격 신설이 가능하며, 자격 신설,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규제 및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편리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자격제도에는 품질 관리 체계가 없으며, 정부 역시 민간자격의 품질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때문에 자격관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시험관리, 채점관리 등을 관리할 수 없어 자격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6. 결론 및 제언

이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개괄하고, 통번역과 관련된 자격의 현황을 검토하였으며, 해외에서 법정통번역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법정통번역 관련 국내외 자격 검정 체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국가전문자격 신설의 필요성이다.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하나, 본 연구는 법정통번역을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법정통번역이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될 시 법정통번역의 위상 제고 및 법정통번역의 가치 및 의의가 강조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가 법정통번역 관련 인력 진출입, 관련기관 인가 등 직접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전문자격으로 신설할 경우, 자격취득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법정통번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자격 검정 제도 투명성의 중요성이다. 자격 검정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제도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응시자에게 온라인으로 자격 검정 시험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평가 후 일정 기간 내에 개인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경

우 자격 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응시자 전체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가능하다면, 피드백을 원하는 응시자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의료 통역능력 검정 시험의 경우, 운영 기관 홈페이지의 ‘이의신청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결과 통보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셋째, 사후관리(자격 갱신 및 재교육)의 중요성이다. 자격 검정 제도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자격 취득 후의 사후관리 부분이다. 해외 관련 자격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자격 발급 후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자격취득자의 업무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정통번역 자격에도 자격 발급 후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자격취득자들이 양질의 법정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은 자격의 재인증 혹은 갱신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격 획득 및 유지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자격취득 후 법정통번역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 및 정책변화에 따라 자격취득 전 교육과 자격취득 후 교육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소수언어 예외조항 마련의 필요성이다. 소수언어의 경우 평가항목이나 기준에 있어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소수언어의 경우 응시료를 내고 자격을 취득해도 통번역 업무를 할 기회가 타 언어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응시료를 경감하는 등의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 사용자가 많지 않은 소수언어의 경우, 출제자, 평가자, 응시자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 언어와 똑같은 평가항목이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평가방법이나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정통번역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법정통번역 자격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법정통번역 자격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 자질을 갖춘 통번역인을 확보하여 양질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자격관리 및 교육제도를 통해 법정통번역의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정통번역 자격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판진행과, 재판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권혜자, 이요행 (2009) 『국가기술자격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 고용정보원.
- 김윤진 (2017) 「대만 사법통역의 역사: 식민과 이민 역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1): 27-50.
- 김진아, 김한식, 유정화, 이인섭, 정정림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 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박지영 (2016) 「국내 통번역 자격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번역학연구』 17(3): 33-59.
- 이동임, 나현미, 정향진, 변현주, 조현혜 (2012) 『전문수사관 국가자격화에 관한 연구(사이버수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유진 (2016a) 「중국어 통역사의 법정통역 규범 인식 연구 - 정확성 관련 규범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103-130.
- 이유진 (2016b) 「한국 법정통역인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8: 111-136.
- 이지은 (2011a) 「법정신문에 사용되는 질문유형과 통역」, 『통역과 번역』 13(2): 127-146.
- 이지은 (2011b) 「사법인들과 통역인들의 사법통역 규범에 관한 인식 연구」, 『번역학연구』 12(3): 197-224.
- 이지은 (2012) 「난민재판 통역의 질에 대한 고찰: 통역인의 역할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1): 213-236.
- 이지은 (2013) 「사법통역 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사법통역 전문가 기초과정 운영 사례」, 『번역학연구』 14(5): 195-223.
- 이지은 (2014) 「이주여성 경찰통역요원들의 경찰통역에 대한 인식 - 사례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2(1): 157-186.
- 이지은 (2017) 「피의자 권리 고지 통역을 통해 본 사법통역 교육의 필요성」, 『번역학연구』 18(2): 127-150.
- 이지은 (2018) 「법원통역인 면접조사를 통해 본 사법통역 동기와 경험」, 『통역과 번역』 20(3): 75-103.

-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8) 『법정통역인 인증제도의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법원행정처.
- 이지은, 이유진, 최효은 (2019) 「평가 척도를 이용한 사법통역 평가 사례연구」, 『번역학연구』 20(2): 81-109.
- 이지은, 장원경 (2016) 「사법통역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20(3): 251-280.
- 정혜연 (2009) 「법정통번역 교육」, 『번역학연구』 10(2): 181-206.
- 정철자, 김진아, 김한식, 박현일, 유한내, 김지은, 박세리, 홍세빈 (2019) 『법정통번역인 평가에 관한 연구』, 서울: 법원행정처.
- 조희철 (2009) 「일본 법정통역의 현황과 과제」, 『통번역학연구』 13(1): 183-205.
- 최철 (2009) 「법정통역의 법적 의의와 제도화에 관한 고찰-미국 판례와 적정절차의 원칙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57-270.
- 한원덕 (2009) 「스페인어 형사법정통역인 교육자료 분석과 고찰」, 『스페인어문학』 52: 277-296.
- 홍서연 (2018) 「국내 사법통역 교육의 현황 및 제언: 보고논문」, 『통번역학연구』 22(2): 207-231.
- Hlavac, Jim (2013) 'A cross-national overview of translator and interpreter certification procedures', *Translation & Interpreting* 5(1): 32-65.

### <인터넷 자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2020)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8%B0%EC%88%A0%EC%9E%90%EA%B2%A9%EB%B2%95%EC%8B%9C%ED%96%89%EB%A0%B9>

민간자격정보서비스 <https://www.pqi.or.kr/indexMain.do>

법무부 (2019)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12월호.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227&fn=temp_158191811724810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http://slitt.deafkorea.com/>

자격기본법 (2017)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62&efYd=20170621#0000>

조효석 (2018. 7. 9.) 「줄잇는 난민 신청자 영터리 통역에 눈물... 드러난 난민

심사 허점」, 『국민일보』, 2020년 5월 3일 검색.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or.kr/3/2/3>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99>

부록

부처별 국가전문자격은 다음과 같다.⑥

소관부처	자격 종목	종목 수	
보건 복지부	간호사	임상병리사	28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장례지도사	
	방사선사	정신보건간호사	
	보육교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안경사	조산사	
	안마사	치과기공사	
	약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치과의사	
	위생사	한약사	
	응급구조사	한약조제사	
	의무기록사	한의사	
	의사		
의지보조기기사			
환경부	정수시설운영관리사(1,2, 3급)	환경측정분석사	4
고용 노동부	공인노무사산업 산업안전지도사	보건지도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4

해양 수산부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고속구조정수 구명정수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종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수산질병관리사 운항사 통신사 항해사	13
중소 기업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2
경찰청	기계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면허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전문강사	5
공정거래 위원회	가맹거래사		1
문화체육 관광부	경기지도사 경주심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예술교육사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사서 생활체육지도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13
방송통신 위원회	무선통신사	아마추어무선기사	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2
관세청	관세사	보세사	2
여성 가족부	청소년상담사(1,2,3급)	청소년지도사(1,2,3급)	6
미래창조 과학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일반, 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감독자, 취급자)	7
안전 행정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일반행정사	3
농림축산 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산물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사 말조련사	수의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8

6)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발췌.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산업통상 자원부	유통관리사		1
국토 교통부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보	19
	건축사	철도차량운전면허	
	건축사(예비)	택시운전자격	
	공인중개사	항공교통관제사	
	교통안전관리자	항공기관사	
	물류관리사	항공사	
	버스운전자	항공운항관리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송용 조종사	화물운송종사자	
	자가용 조종사		
교육부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8
	사서교사	정교사	
	실기교사	준교사	
	영양교사	평생교육사	
국민 안전처	기업재난관리자	소방안전교육사	4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조사관	
국세청	세무사	주류제조관리사	2
특허청	변리사		1
해양 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면허		1
법무부	변호사		1
법원 행정처	법무사		1
금융 위원회	공인회계사	보험중개사	4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총계			138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Jeong, Cheolja · Yu, Han-Na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 importance of and needs for quality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are growing, the quality of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s not guaranteed in Korea.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reason for this is lack of qualification system.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qualifications related to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Korea, and reviews how overseas countries are operating qualification systems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Based on these, the study examines the suitability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and suggests introducing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The overview of the overall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detailed suggestions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qualification system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in Korea,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ing the quality of legal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 ▶ Key Words: court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Private Qualification, suitability
- ▶ 주제어: 법정통번역, 국가전문자격,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편제적합성

정철자

한국의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교수

cheoljajeong@gmail.com

관심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 교수법, 통번역사의 정체성

유한내

전남대학교 국제학부 영어학과 조교수

ambrosia14@gmail.com

관심분야: 번역비평, 번역철학, 번역자의 지위와 역할

논문투고일: 2020년 5월 5일

심사완료일: 2020년 5월 21일

게재확정일: 2020년 5월 25일